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간담회

2023년 7월 8일(토) 14:00 | 서울본부 회의실 2층 206호

주최: 서울녹색당
주관: 서울녹색당정책위원회

사회: 김서린/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발제1: 문수영/서울녹색당 정책위원
발제2: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제3: 오현화/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
질의응답및토론

서울시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간담회

이주여성 돌봄노동

신청



일시: 7월8일(토) 2시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2층 206호
(서울시마포구환일길13강북노동자복지관)
문의: ksr.greenparty@gmail.com

bit.ly/이주여성X돌봄노동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간담회 순서

01 인사나누기

02 들어가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

문수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

03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김혜정 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04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 정책

오현화 정치하는엄마들

05 질의응답 및 토론

06 기념촬영

01 인사 나누기

02 들어가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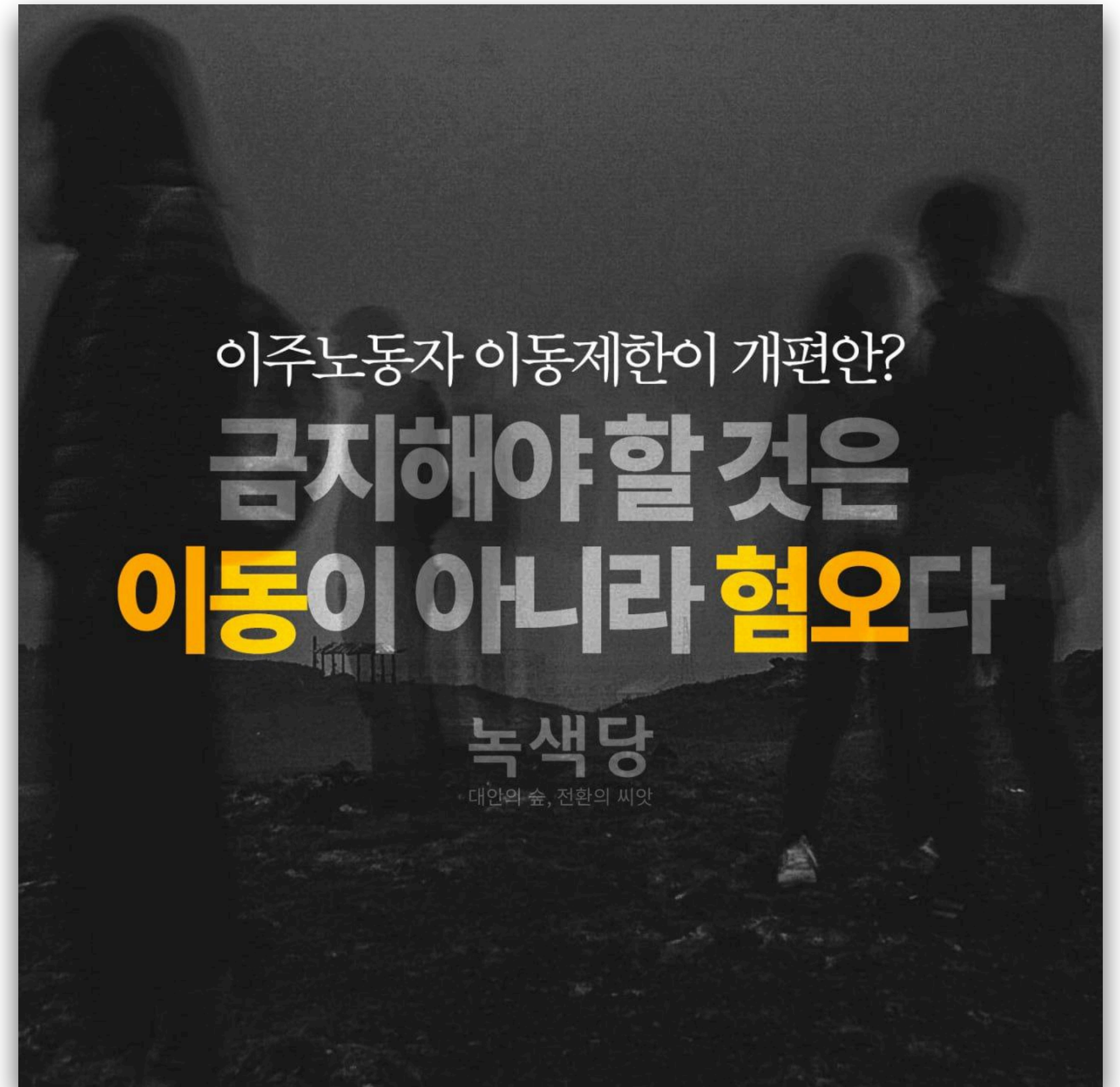
문수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

이주노동자 이동제한

2023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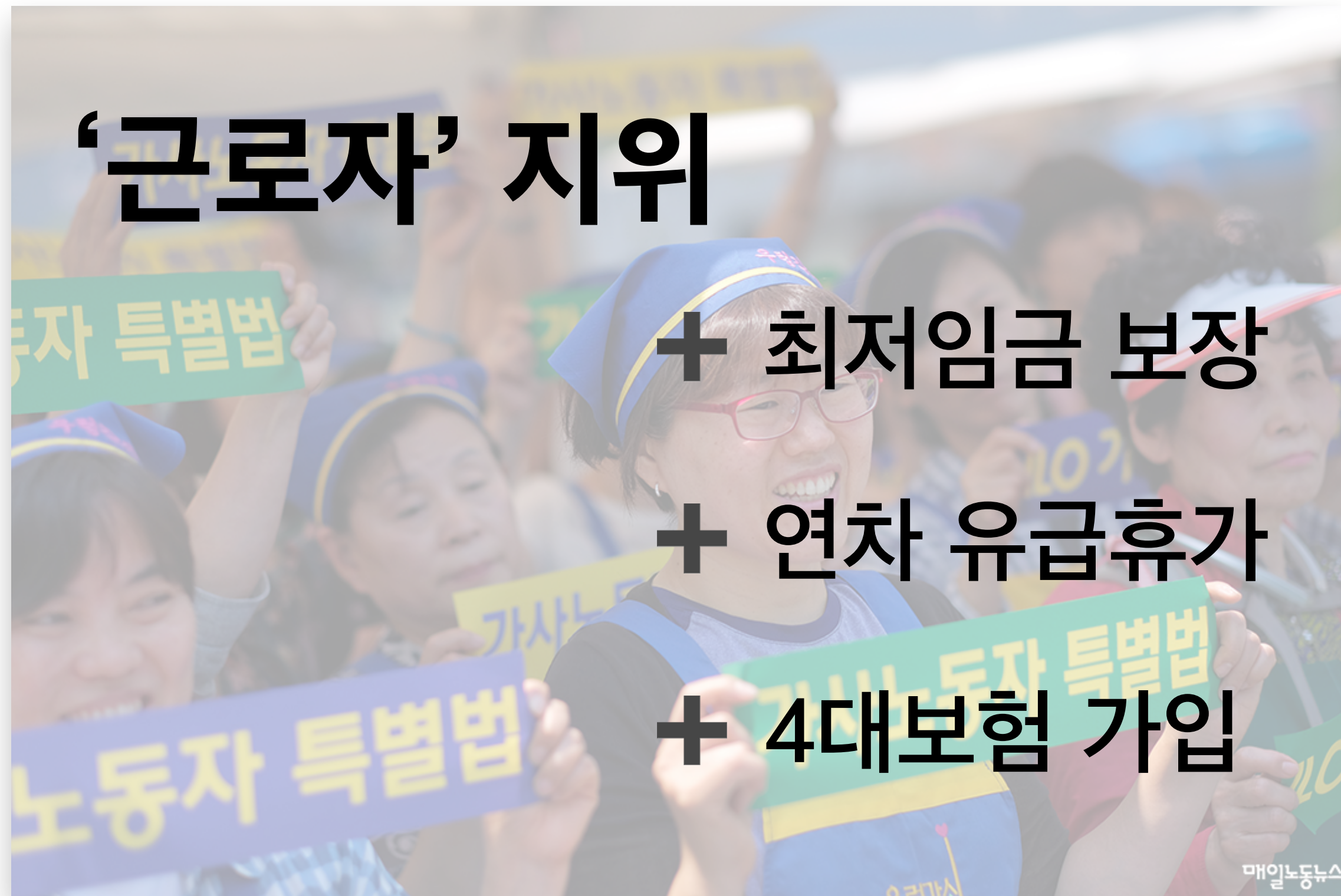
□ 사업장 변경 제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변경 허용범위	업종 내에서 변경 허용	업종 + 지역 내에서 변경 허용 ※ '23.4월 신설된 세부업종 쿼터(조선업)의 경우 해당 업종 내에서 이동
내국인 구인노력	7~14일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이 변경 시 대체인력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장기근속 지원	-	장기근속특례 신설
갈등 예방 지원	-	- 전문가 지원단 운영 - 노사에 대해 변경사유 및 이력 등 정보 제공



가사근로자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 사각지대

비인증 기관, 개인과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
미등록 체류 상태인 가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음

≡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가정이라는 일터에 맞춘 프로그램 필요

≡ 제공기관 직고용

2023년 합계출산율 발표

뉴스데스크 김성현

합계출산율 0.8명대도 깨졌다..2045년엔 사천만 명 시대

2023-02-22 19:45

NEWSIS

합계 출산율 '0.78명'...OECD 평균 절반도 안돼

2023.02.22. 오후 12:00 · 수정 2023.02.22. 오후 1:06

기사원문

PICK

파이낸셜뉴스

출산율 0.78명 '끝없는 추락'...韓 초고속 '인구소멸' (종합)

입력 2023.02.22. 오후 1:28

기사원문

홍예지 기자

합계출산율 0.59명 그친 서울... 오세훈 “이대로면 국가 존속 못 해”

2023.02.24. 오후 5:30

기사원문



구글트렌드

조정훈(시대전환)의원, 법안 발의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120819	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	2023-03-22				소관위심사
2120770	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	2023-03-21	2023-03-22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임.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음.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서울시 저출생 정책

N | **합계출산율**



뉴스

• 관련도순 • 최신순

노컷뉴스 | 3시간 전 | 네이버뉴스

합계출산율 '비상'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0.78명)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모두 최저기록을 계...



합계출산율 '비상' 노컷뉴스 | 3시간 전 | 네이버뉴스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 노컷뉴스 | 3시간 전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전체보기 >

파이낸셜뉴스 | 3시간 전 | 네이버뉴스

합계출산율 0.78명, OECD 꼴찌...패러다임 바꿀 '특단 대책' 논의 열려[인...

지난 16년여간 누적 280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를 밀돌며 기존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의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인...



"출산장려방식 정책 한계... 패러다임 전환할 때" [...] 파이낸셜뉴스 | 49분 전 | 네이버뉴스

뉴스1 | 1일 전 | 네이버뉴스

전국 유일 합계출산율 증가 대전 "2023년 인구 회복 원년으로"

대전지역 합계출산율이 1년새 3.7% 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가운데, 대전시가 2023년을 '인구 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5일 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대전의 합계출산...



인구의 날, 대전은 출산율 증가 도시...인구회복 원년 쿠키뉴스 | 21시간 전

[사설] 인구회복 원년 선포한 대전시, 할 일 많다 금강일보 | 1일 전

중부일보 | 56분 전

[창간 32년]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소멸

지난해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 대로 떨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7만8천990명)가 출생아 수(7만5천277명) 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



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소개팅,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길 잃었다

노컷뉴스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넘으면 긍정 변화 힘들어"

입력 2023.07.03. 오후 2:38 기사원문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서울팅' 주선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서울팅'을 주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단독]서울시, '자만추'까지 돕는다...저출생 극복 안간힘

입력 2023.05.22. 오후 8:20 기사원문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진행상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국무회의(23.05.23)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23.07.03)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3.05.22)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관련 일지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가사) 노동자 도입 정책 건의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가사·돌봄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가사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안 발표
2023년 3월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년 5월23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 지시
2023년 5월25일 고용노동부 토론회	비전문취업(E-9) 비자가 허용되는 신규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 추가방안 제시
현재 고용노동부·서울시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시행 준비 중

한겨레 헤드라잇,(2023,6) “대통령 한마디에 실태-수요조사도 없이...외국 가사노동자 졸속 도입”

03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김혜정 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이주가사 노동자와 인권

2023VER.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조정훈 의원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212077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철회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0	2023-03-21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제21대 (2020~2024) 제40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임.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단 의견이 나오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음.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단독] 조정훈 "최저임금 적용 없앤 月 100만원 외국 인 도우미 도입"

권준영 | 입력 2023. 3. 20. 19:00 | 수정 2023. 3. 21. 09:57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제안이유(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본다.

초저임금을 통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주장

OhmyNews 오마이뉴스

오세훈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38만~76만원"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싱가포르, 최저임금제도 없어... 현지 매체, 월 '91만~115만원+알파'

22.09.29 13:52 | 최종 업데이트 22.09.29 13:52 | 글: 박성우(ahtclsth)



▲ 오세훈 서울시장의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정부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노동부의 이주 가사 노동자 관련 규정과 현지 매체의 게시물 등을 확인해보니 오 시장이 언급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오 시장이 언급한 "월 38만~76만 원"은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월평균 최소금액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자는 급여 외에 고용부담금, 생활비 등 다른 비용도 내야 한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도입검토 필요성

□ **(필요성)**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또한,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연령도 50~60대로 고령화**

□ **(고려사항)** 다만,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 가정 내 근무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어려움 등의 노동계 우려도 존재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추진방향(안)

2023.5.25 고용노동부 공개토론회

□ (송출국)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 등 중심으로 우선 협의

□ (고용방식)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 검토

□ (자격요건) 관련 경력 및 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

◦ 일정시간 이상의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거쳐 근무처 배치

* 한국어·문화, 가사 관련 기술 및 위생·안전, 노동관계법, 고충처리 등 교육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추진방향(안)

2023.5.25 고용노동부 공개토론회

□ (규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소규모로 도입

□ (지역) 지역별 서비스 수요, 지자체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를 통해 확정

■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고용노동부, 서울시)

- 비자: E-9(비전문취업비자)
- 대상: 동남아시아 지역 이주여성
- 노동조건: 출퇴근 교통비 지급(논의 중)
- 인원: 100명
- 고용형태: 서울시 또는 민간기관과 고용
일하는 가정과 직접 계약(미정)

언론보도로 살펴보는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관련한 시민단체 입장문 및 언론분석>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제안

번호	일자	언론사	보도내용
1	2022.9.27	국민일보	오세훈 “월 38~76만원 수준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해야”
2	2022.9.29	오마이뉴스	오세훈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38만~76만원”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싱가포르, 최저임금제도 없어...현지 매체, 월 '91만~115만원+알파'
3	2022.10.3	경향신문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월 38만~76만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한국에서 가능할까

○ 조정훈 의원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발의

번호	일자	언론사	보도내용
1	2023.3.20	디지털타임스	조정훈 "최저임금 적용 없엔 月 1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
2	2023.3.21	한겨레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논란...“노예 노동하란 거냐”

○ 서울시X고용노동부 '월 2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발표

번호	일자	언론사	보도내용
1	2023.5.8	한국경제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2	2023.5.19	오마이뉴스	반값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답이 아닙니다
3	2023.5.23	한겨레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A teal-colored folder graphic with a white paperclip on the right side. The folder is open, showing a white page inside. The text is centered on the teal background.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이주여성가사노동자- 노동실태

(출처: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안, 2017)

- 근무형태 : 입주제: 82%
- 근무일 : 주6일(86%)
- 근로시간 : 일16시간 이상(62%)
24시간이라고 답변한 가사노동자도 있음
- 휴일 : 주1일 휴무제(54%)
일요일 아침에 나와 당일 저녁귀가
- 급여 : 200만원 이하(74.2%)
150만원 이하 초저임금(11.3%)
- 사회보험 : 47%가 하나도 없는 상태

경험해 본 근무형태(다중응답)

	빈도	퍼센트
입주제	46	82.1
출퇴근제	6	10.7
시간제	4	7.1
합계	56	100.0

현재의 근무 형태

	빈도	퍼센트
1-입주제	54	90.0
2-출퇴근제	4	6.7
3-시간제	2	3.3
합계	60	100.0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가사근로자법 2022.6.16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가사근로자법 2022.6.16 시행)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가사근로자법 2022.6.16 시행)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체류권

국내 체류 이주민 현황

표 2-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체류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인구	51,779,892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4.21%	4.57%	4.87%	3.93%	3.79%

※ 인구는 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인용하였음.

표 2-2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전년대비)	(106.4%)	(108.6%)	(106.6%)	(80.6%)	(96.1%)
장기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1,569,836
단기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 장기체류외국인 수 : 등록외국인 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주요비자와 이주여성

성별	B1 (사증 면제)	C3 (단기 방문)	D2 (유학)	E6 (예술 흥행)	E8 (계절 근로)	E9 (비전문 취업)	F4 (재외 동포)	F5 (영주)	F6 (결혼 이민)	H2 (방문 취업)
총계	165,869	97,225	111,178	3,285	383	217,729	478,442	168,118	134,285	125,493
남성	82,370 (49.7%)	64,352 (66.2%)	49,663 (44.7%)	1,027 (31.3%)	320 (83.6%)	198,566 (91.2%)	240,901 (50.4%)	79,207 (47.1%)	27,309 (20.3%)	74,085 (59.0%)
여성	83,499 (50.3%)	32,873 (33.8%)	61,515 (55.3%)	2,258 (68.7%)	63 (16.4%)	19,163 (8.8%)	237,541 (49.6%)	88,911 (52.9%)	106,976 (79.7%)	51,408 (41.0%)

■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취업가능비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 방문취업(H-2)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
단,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

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① 체류 (취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② 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③ 취업허용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④ 취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 취업 교육 → 사업장배치 * <u>사업장변경 제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 교육 → 구직등록 →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 → 근로계약 후 취업 * <u>사업장변경 무제한</u>
⑤ 사용자의 고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구인노력 → 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구인노력 →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장 변경사유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 비전문 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의 문제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간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장 변경 제약으로 인해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듣고 있음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젠더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 판결을 통해서 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1) 장소 및 관계적 특수성 : 노동현장, 성매매 유입 가능성 높은 장소, 가정내 결혼이주여성(또는 그 가족)친족성폭력

2)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 사용자에 의한 성폭력
-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열위: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재입국특례제도),
- 기숙사 내 발생한 사건
- 사업장 등에서 발행하는 불법촬영 피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 분석 결과 보고회

일시: 2021. 10. 12. (화) 14:00
장소: ZOOM (신청이후 별도 링크 안내)
신청방법: <https://forms.gle/SiCKrYAiqRrHhCp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그에 따른 체류권 문제 등 최근 10년간 법원의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지위와 현황,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논의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Program 사회 **희모영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획의도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표 **판결을 통해 본 이주여성 대상 '폭력' 사건 특징과 문제점 -성가정폭력, 체류 중심으로-**
판례 분석단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은혜 아시아의 창 정진아 법률사무소 생명

토론 **지원 사례를 통해 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과정의 어려움**
고명숙 이주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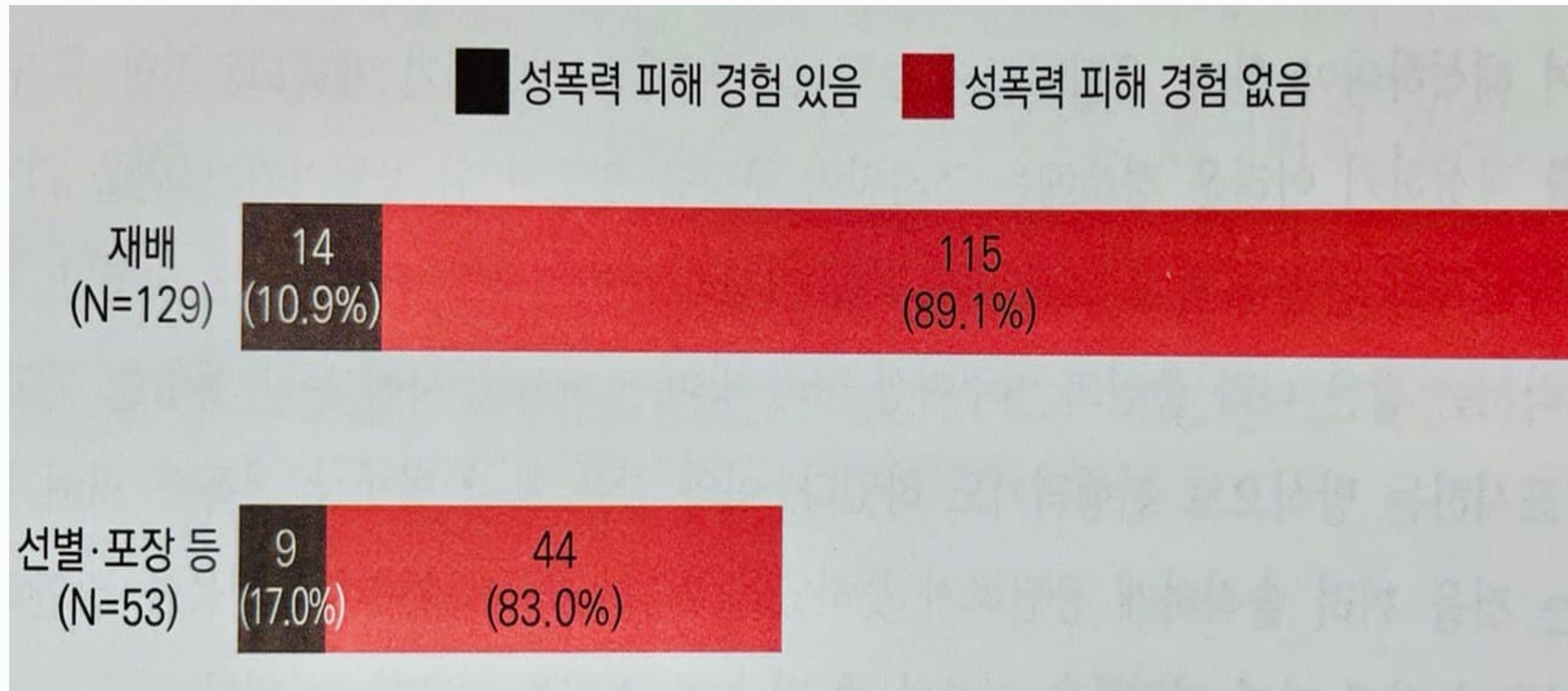
이주여성의 인권과 폭력 사이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종합토론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t. 02-3672-8988 e. wimigrant@wimigrant.org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2016)



이주여성상담소 상담통계

이주여성 상담소 현황(여성가족부, 서울시)

구분	계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개소수	10	2	1	1	1	1	1	1	1	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여성가족부 대상기관)

연도	계	가정 폭력 상담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혼	부부 갈등	성 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19년	5,332	985	170	85	3	7	963	449	5	151	42	2,472
'20년	9,613	2,785	567	6	26	214	864	436	-	592	11	4,112
'21년	24,691	9,920	1,305	10	101	114	2,734	1,059	4	1,482	372	7,590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2,341건 (2022.1-12)

상담유형별 통계(2개년 추이)

단위 : 건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2022.1~12)

208,656	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갈등	심리*정서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및국적	취업및노동	쉼터	의료
총계	209,666	10,778	988	870	50	8,596	1,477	3,035	4,078	12,331	11,855	6,825	1,049	91,785
비율	100	5.1	0.5	0.4	0.0	4.1	0.7	1.4	1.9	5.9	5.7	3.3	0.5	43.8
서울	116,639	6,301	624	481	32	6,492	1,173	2,008	2,304	8,408	4,975	4,376	442	52,419
비율	100	5.4	0.5	0.4	0.0	5.6	1.0	1.7	2.0	7.2	4.3	3.8	0.4	44.9
지역	93,027	4,477	364	389	18	2,104	304	1,027	1,774	3,923	6,880	2,449	607	39,366
비율	100	4.8	0.4	0.4	0.0	2.3	0.3	1.1	1.9	4.2	7.4	2.6	0.7	42.3
1 수원	15,995	341	31	36	1	311	60	147	332	724	891	314	38	4,869
2 대전	14,831	955	70	46	1	412	65	216	233	892	806	688	135	6,832
3 광주	16,660	1,422	53	181	8	436	35	121	205	671	399	392	141	9,886
4 부산	14,967	943	91	48	2	431	85	157	589	567	707	398	232	5,173
5 전주	6,631	119	21	9	0	93	13	84	61	155	128	164	20	1,713
6 구미	23,943	697	98	69	6	421	46	302	354	914	3,949	493	41	10,893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인권보장

최저임금제도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고 '초저임금 돌봄노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와 더불어 그 영역을 '국민여성'에서 '이주여성'으로는 **성·인종차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로 이주여성의 **돌봄 노동**을 상상하는 것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도 유해하다

ILO 국가별 비준현황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강제노동 협약 (Forced labor convention) C.029	0	0	0	0
강제노동 폐지 협약 C. 105	X	0	X	0
집회, 결사의 자유 협약 C. 87	0	0	X	0
조직화 및 단체 교섭 권리 협약 C.98	0	0	0	0
최저 연령 협약 C. 138	0	0	0	0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C. 182	0	0	0	0
동일 보수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C.100	0	0	0	X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협약 C.111	0	X	X	비준('06)* 해당없음
가사노동자 협약 C.189	X	X	X	X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

제3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제5조: 학대,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가사노동자 보호

제6조: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 이행 감독

제7조: 가사노동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수행업무, 보수에 대한 계산방법, 노동시간,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알 수 있도록 조치

제8조: (국제)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위 사항을 포함한 고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국경을 넘기 전에 받도록 법 규정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

제9조: 입주 가사노동 관련 보장 조치

- 가사노동자가 입주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 보장
- 입주 시 휴식, 휴가, 휴일에 가구에 머물거나 가구 구성원과 함께할 의무 없도록
- 여행 서류와 신분증을 가사노동자가 소지할 권리 보장

제10조: 노동시간, 연장노동수당, 휴게시간과 주휴 및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가사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주휴는 적어도 24시간의 연속된 휴게 시간 보장,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 간주

제11조: 최저임금보장,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보수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

제12조: 임금지급방식-임금은 적어도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 동의 시 일부 현물 지불

제13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제14조: 임신,출산을 포함한 사회보장 보호

제15조: 직업소개소의 폭력적인 관행으로부터 가사노동자 보호

제17조: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한 신고제도와 방법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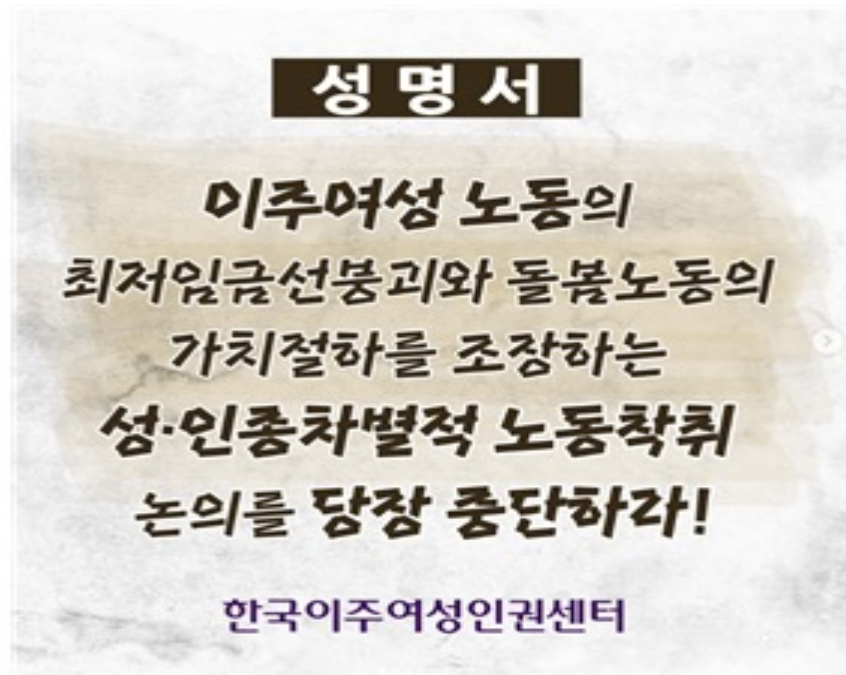
시민단체 입장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관련한 시민단체 입장문 및 언론분석>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가사근로자 고용 관련 성·인종차별적 법·제도 규탄

번호	일자	단체/연대단위	입장내용
1	2023.3.22.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	2023.3.22.	[공동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3	2023.4.18.	[공동기자회견] 공공기관이주여성 노동자처우개선 대책위원회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4	2023.5.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5	2023.5.10.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6	2023.5.11.	[공동성명] 전국여성노동자회	저임금 이주여성노동자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시민단체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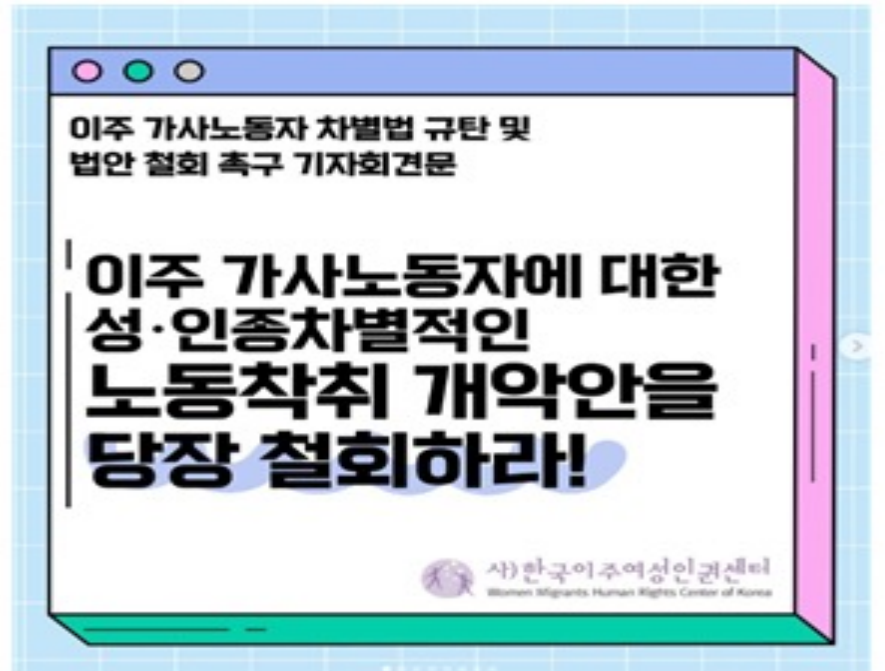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2023. 3. 22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성명] 2023. 05. 11.

**저임금 이주여성노동자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한국여성노동자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04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정책

오현화 정치하는 엄마들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정책

오현화

0. 들어가며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이라고 했을 때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인 상황은 불명예를 넘어 국가의 존폐를 우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저출생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는 회의적이다. 그 한 예가 지난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 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양육자 관점에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이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단, 본고는 양육자로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소속단체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1.전제가 틀렸다; 돌봄이 여성과 청년에게만 집중되어서 출생률(출산율)이 떨어지는가

한국의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지적된다. 대체로 보육과 양육의 어려움, 고물가, 1인가구증가, 수도권 집중화 등이다. 개인의 성향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하지 않고 한쪽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그래도’ 타계책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연 보육과 양육의 어려움이 돌봄이 여성과 청년에게 집중되었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이를 덜어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돌봄정책은 후술하겠지만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꾸준히 변화해왔다. 부모의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다) 보육 종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은 줄줄이 폐원하고 있다. 코로나19기간동안 가정보육이 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돌볼 아동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이다. 인기가 좋다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니다. (이 와중에도 사설 학원 혹은 영어유치원에서의 돌봄 수요는 계속 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 돌봄의 부담은 단순 보육인력이나 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정도 보육지원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가정양립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4번째로 긴 나라이다.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해도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제도 밖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해 애를 써야한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벅찬 세상에 돌봄까지 해야하다니, 그 막막함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이제는 노동에 돌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노동을 맞추는’ 전환이 필요하다.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일과 가사를 하고도 쉴 수 있는 시간이다.

2. 이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없었는가

서구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개발국 여성들이 돌봄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의 여성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돌봄을 저숙련 저소득 여성의 경제활동 수단으로 고착화하고 고소득 여성과 이주여성노동자 사이의 계급화를 공고히 하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 및 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제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다. ‘조선족 이모’라는 이름으로. 조선족 가사도우미의 처우나 이들 입장에서가 아닌 ‘조선족 이모’를 고용하는 양육자의 경험은 어떠할까. 손여경, 이송이(2011)¹의 ‘일하는 엄마의 조선족 이모 고용경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조건, 육아, 가사, 생활방식”의 범주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 10년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이후 상황이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비싼 임금, 부당한 임금인상, 휴무 및 보너스와 같은 추가비용 부담, 그리고 정부차원의 관리나 대책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엄마보다 조선족이모를 더 잘 따르는 현상(조선족 이모와의 애착), 조선족이모의 아동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조선족이모의 말투를 배우게 되는 언어습득 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큰 아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일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의 범주에서는 조선족이모의 위생관념 부족, 우리와 다른 음식문화의 차이, 가사활동 수행방법에 대한 견해와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이모의 생활방식과 관련하여 일하는 엄마들은 장시간의 TV시청, 잦은 전화통화, 다른 집과 비교하기,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 갑작스러운 지인의 방문, 가족 흥보기, 남녀차별, 무례한 태도, 불안한 사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손여경, 이송이(2011) 같은 문헌)

위의 언급된 문제들은 ‘조선족 가사도우미’를 ‘조모’, ‘친인척’으로 대치한다고 해도 유효하다. 사실 이 문제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누구와도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다. 돌봄이 공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적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현재 양육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 가사도우미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관리나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공공이 가져가야 하는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

3. 주먹구구 ‘외국인 수입’ 정책에 대한 피로와 분노

¹ 손여경; 이송이. 일하는 엄마의 조선족이모 고용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11; 16(2) 115-144.

이러한 주먹구구식 ‘외국인 수입’은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계에서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남성과 결혼할 여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외국인 여성’을 ‘수입’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행태에 동의하고 이후 이들의 삶의 영역 즉, 노동 현장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불평등, 폭력, 인권유린을 방기했다. 폭력의 실상을 견디는 것도, 고발하는 것도, 개선을 제시하는 것도 개인과 민간 시민사회가 짊어졌다.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국가는 제대로 된 응답도 최소한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3대 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다. 지난 달 기준 400명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명이 넘는다. 당장 있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의 근로자성을 보장하는 것도 까마득한데 제대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다시 민간영역으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은 어떠한가. 돌봄의 여러 갈래중 아동 돌봄 즉 보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역사는 길지 않다. (사실 다른 돌봄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정우열(2020)²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태동기(1921~1960), 확장기(1961~1989년), 성장기(1990~2012), 변혁기(2013~현재)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의 원조로 아동에 대한 빈민구제사업을 한 태동기 이후의 시대가 일반 아동의 보육 정책이 논의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기혼여성의 노동력 증가와 결혼가정 증가로 돌봄수요가 폭증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법인에서 개인과 단체로 확장하였다.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통해 일반 아동이 유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1981년 4월 아동 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무료 탁아시설에 대한 운영을 법인뿐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제는 다시 허가제로 바뀌고 새마을 유아원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육정책은 2-4년 주기로 계속 변화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 0~5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보육시설은 지자체에 감독을 받고 보육 종사자의 자격과 역량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60년 동안 공공의 영역으로 강화된 보육 정책을, 다시 민간영역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잊을만하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 다시 민간으로 보육을 이관하여, 2-3년에 한 번씩 법을 개정하면서 땀질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공공영역으로 들어온 보육의 개선에 눈감고 싶은 너무 쉬운 처방은 아닌가.

5. ‘누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가

² 정우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2020; 4(2) 201-210.

여기에 잠깐, 정말 경제적으로 ‘평균적인’ 양육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고 싶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8인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 역시 사용자인 양육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2023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 4,816원이다. 무상보육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육자들도 있다. 여기서 출퇴근 혹은 입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조선족이모가 아닌 우리말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 정책이 ‘공공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6. 돌봄의 시간은 당신의 생각보다 길다

국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종사자 자격과 복지를 책임지고, 양육자 자기부담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는 이상적인 정책을 준비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최저임금 이하의 문제는 아예 제외하겠다) 그러면 돌봄의 공백이 메워지고 양육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

흔히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 컸네, 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초등 이후의 아이도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양육자가 여전히 아이의 초등 입학 이후 휴직을 한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어도 인구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 들어가기 어렵다. 초등 3학년 이후는 돌봄교실에 가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학원이 영역이다. 돌봄교실을 가진 않는 아이들은 동네 태권도 학원이 돌봄을 담당한다. 태권도 학원의 프로그램과 관장님과 사범님들의 ‘선의’로 아이들은 유년기를 보낸다.

양육자들이 염려하는 돌봄의 공백은 당장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1-2년이 아니다. 보다 긴 시간, 긴 세월의 돌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진다. 이것이 출생률과 연결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가 62.7%를 차지했다. 2012년 51.5%였던 첫째아 비율이 높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둘째아 출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체 출생아 전체 출생아가 줄어든 가운데 첫째아 출산은 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은 줄어서다. 전체 출생아는 1만2천명 줄었고 첫째아는 8천명 ‘늘었고’. 둘째아는 1만5천명 줄었다. 셋째아 이상은 4천명 줄었다.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생물학적인 이유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수 없는 이유 외에도 정은희 외(2012)³의 연구 이후로 첫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출산의 제약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일가정양립, 양육자의 노동시간 및 노동환경, 돌봄지원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다시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돌아온다.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시기가 첫째아 출산후 2-4년임을 고려할 때 (정은희 외 (2012) 같은 문헌) 돌봄 정책은 보다 폭넓은 연령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7.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³ 정은희 외. 둘째 자녀 출산 제약 요인분석과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낳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더불어 이미 아이가 있는 양육자가 둘, 셋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수차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 위주의 정책을 던지고 단시간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또다른 근시안적인 정책,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과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간담회와 연구 자료들이 있다. 자료가 없어서, 몰라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미 있는 보육정책부터 정비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노동시간 유연화, 초등돌봄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 오랜시간 제기되어온 문제가 많다. 이 이슈들은 어차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하고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안그래도 혼돈의 돌봄 세계에 폭탄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

8. 나가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는 노동, 이주민 인권, 여성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얽혀있다. 여기서는 지극히 양육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 법안의 불편했던 점을 언급하였다. 돌봄에 대해서는 2박 3일을 떠들어도 할 말이 많다. 다소 거칠게 정리된 글이지만 녹색당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양육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안하길 기대한다. 녹색당의 정책 방향이 양육자의 욕구 내지는 필요와 떨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연결하는 것이 부족하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결국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낼 수있어야 한다. 보다 많은 양육자들을 만나고 비판보다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05 질의응답 및 토론

06 기념촬영